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15

발의연월일: 2021. 9. 28.

발 의 자:추경호·김상훈·김선교

김용판 · 조명희 · 윤창현

김예지 • 이주환 • 성일종

백종헌 · 엄태영 · 이종배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,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,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,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,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 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을 보다 적극 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의 성장·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8조제1항 등). 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9조제3항,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8조제1항제3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)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례) ① -----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-----2024년 1 12월 31일까지, 중고자동차를 2 2월 31일-----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 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・② 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 (3) -----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 --2024년 12월 31일-----

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

#### ④ ~ ⑨ (생 략)

제111조의2(경형자동차 연료에 저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 한 특례) ①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,000시시 미만 의 자동차(이하 이 조에서 "경 형자동차"라 한다)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 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 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 하는 유류(이하 이 조에서 "유 류"라 한다)를 구매하는 경우,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 업장의 관할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 "관할 세무서장"이라 한다)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.

#### 1. • 2. (생략)

② ~ ② (생 략)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세111조의2(경형자동차 연료에
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
한 특례) ①
2024년 12월 31
일
<del>_</del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~ 12 (현행과 같음)
세118조(관세의 경감) ①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 다.

- 1. 2. (생략)
- 3.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,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(그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)
- 4. ~ 2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2024년 12월 31일</u>
4. ~ 2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